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7. 13.(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5일 공포·시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개선하여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 해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 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동일하여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되는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 되어 발령한 오존 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신고서에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6.3.17.) 내용을 반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했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운영 제도 개요.
3.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1-6860)
		담당자	사무관	한상윤	(044-201-6879)
		담당자(오존)	사무관	임옥상	(044-201-7722)
담당 부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담당자(IoT)	사무관	강택신	(044-201-6906)
		담당자(서식)	사무관	정창명	(044-201-6914)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연번	주요 개정내용	조문번호
1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그 자동전송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기록·보존 의무를 해당 자료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제36조 제2항
2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합리적 정비 -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오존농도 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 기준 오존농도를 0.10ppm 미만으로 개선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별표7
3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 기재 허용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26년 7월 15일에 개정된 신고서 서식 : 총 3개 서식 ①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20호의2서식),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0호의2, 제24호, 제27호 서식
4	○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현행화 -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 신청시 배출가스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3.17)됨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시행규칙 내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제66조제3항제4호, 별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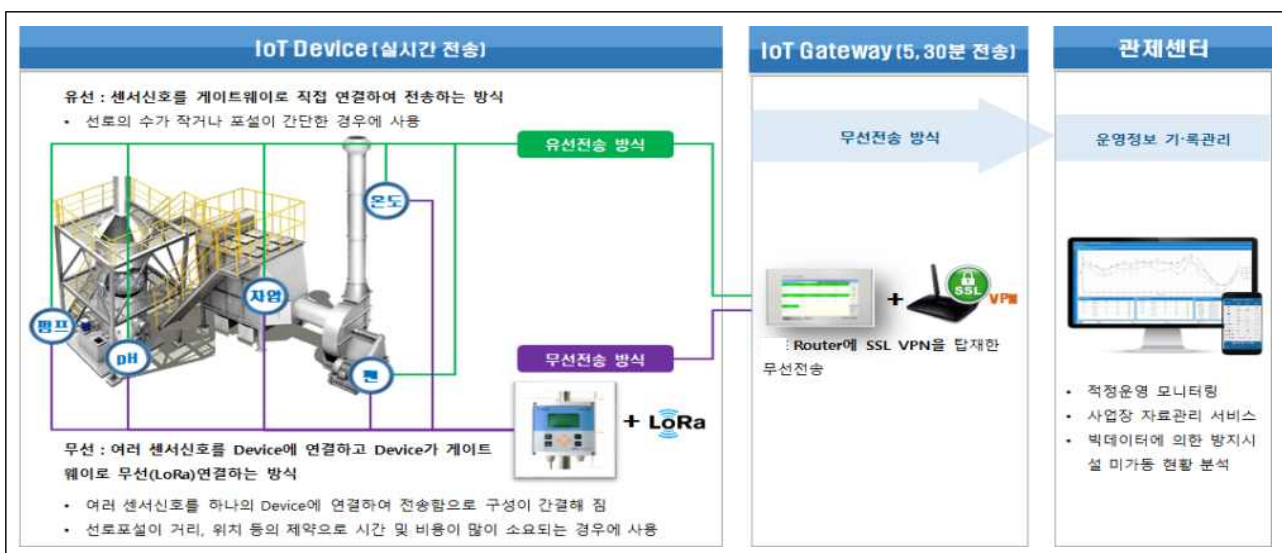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운영 제도 개요

- (개요)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원격감시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설치대상)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별표9의2)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수 : 약 38천여 개소('26.12월까지 부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시행규칙 별표9의2) 》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원격감시) IoT 측정자료는 자료 수집기(게이트웨이)를 거쳐 관제시스템 (그린링크)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사업장·지자체에 정보 제공



붙임 3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 (환경기준) '93년부터 8시간 0.06ppm 이하, 1시간 0.1ppm 이하로 관리

□ (오존경보제) '95년부터 시행, 1시간 농도 기준으로 발령

- (목적) 고농도 오존 발생시 회피를 통해 건강보호 및 저감조치 시행
- (발령기관) 광역자치단체(전국 16개 시·도)
- (경보권역) 16개 시·도 135개 권역
-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

구 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기준(농도)	0.12 ppm 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해제기준(농도)	0.12 ppm 미만*	0.3 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0.5 ppm 미만 (경보로 전환)

* 주의보 해제기준 농도는 2026년 7월 15일부터 0.10ppm 미만으로 변경됨

□ (오존예보제) '15년 4월부터 시행

- (목 적)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예보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 (기간·횟수) 4월 1일~10월 31일, 1일 4회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예보등급)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예보 등급과 행동요령 >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기준 농도(ppm/hr)		0.030 이하	0.031 ~ 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